

[주주여러분들께]

### 소규모합병 공고

주식회사 뉴프렉스(이하"당사") 2022년 12월 28일 주식회사 뉴크리텍(이하 "뉴크리텍)과 합병계약 (이하 "본건 합병"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- 아래 -

- 합병방법 : 당사가 뉴크리텍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뉴크리텍은 해산함.
- 합병비율 : 당사 : 뉴크리텍 = 1 : 0.3525200
- 소멸회사의 현황
  - 상호 : 주식회사 뉴크리텍
  - 본점 소재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
- 합병기일 : 2023년 03월 03일
- 당사와 뉴크리텍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.
-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 - 행사절차 : 2023년 0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본 공고 하단의 [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] 를 기재하여 다.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
    - 기간 : 2023년 01월 11일부터 2023년 01월 25까지
    - 행사방법 및 장소
      - 명부주주 : 2023년 01월 25일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 (☎ 031-362-2322)  
(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 재무팀 앞)
      - 실질주주 : 2023년 01월 22일(※명부주주보다 3일 전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 
(제출절차 및 기한은 거래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 요망)
    -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.
    -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
####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(☎)뉴프렉스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☎)뉴프렉스가 (☎)뉴크리텍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

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주주명
소유주식의 종류	소유주식수

2023년    월    일

주소 :  
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  
 성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2022-12-28

주식회사 뉴프렉스 대표이사 임 우 현